

국가정보화 추진정책에 관한 연구 -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을 중심으로 -

정 충 식*

A Study on the Stat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hoong sik Chung*

요 약

오늘날 선진 각국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통신망의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전자문서와 전자결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무관리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선진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례와 우리나라의 추진 정책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이를 국가정보화 추진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사무관리의 측면에서 EDI의 적용업무 분야 등 보다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emerging information society, a well-established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and creating national wealth. Most of the advanced nations in the world are putting forward government-driven projec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ir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strategical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and industrial essential for their infrastructures. Development of the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an help unleash an information revolution that will change forever the way people live, work,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Nonetheless, the pres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Korea leaves a lot to be improved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of information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the KII(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does not merely mean the construction

* 용인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of physical network that enables the transmission of various modes of information such as voice, data, and image. It further implies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social overhead capital, rang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social and cultural which are conducive to seamless flow of inform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KII, it is critical to build the public consensus 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formatization. At the same tim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imely and adequate supply of specialized personnel, the updating of policy and regu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세계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라는 통신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점차 고도화하는 정보사회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21세기를 맞이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반구조는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통신기반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추진중인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건설구상은 정부·대학·기업·소비자 등 모든 정보소비주체를 컴퓨터로 거미줄처럼 상호 연결시켜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정보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단위 또는 국가간 정보망을 의미한다. 1993년 9월 15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NII Agenda for Action에서 “미국의 미래운명은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엘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

부의 주도와 업계의 의욕이 맞물려 준비작업이 한창인 21세기 정보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향후 2015년까지 정부와 산업체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기술개발에 총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¹⁾.

일본도 경제대국으로서의 기득권 유지와 고령화사회의 대비 등 사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사회자본건설” 구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섬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이 신사회자본이라는 개념하에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은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21세기에도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총 53조엔의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모든 가정에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우정성은 1994년 5월에 전국의 700만개 사업소와 5,400만 가입자를 2010년까지 광섬유로 연결한다는 「21세기 지적 사회로의 개혁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정비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²⁾.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21세기의 대응전략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선진국들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 기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정부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하여 총 45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³⁾. 정부는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단순한 통신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아래 초등학교에까지 인터넷을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범국민적인 정보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측면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조만간에 국민총생산에서 자동차산업을 앞질러 막대한 산업 연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⁴⁾. 더나아가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은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의 측면에서도 행정조직, 행정행태, 정책과정, 인력관리, 사무능률, 행정서비스 및 정보관련 제도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총두처는 1996년 4월 23일 정부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전 행정기관의 공문서가 전자문서로 생산·유통되도록 정부관인을 전산입력해 활용하는 전자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96년 7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에 컴퓨터를 이용한 공문서 기안 및 결재를 허용하는 전자결재제도가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⁵⁾.

따라서 이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그

에 따르는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연구는 사무자동화의 관점에서 그 적용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그에 따른 적용업무의 분야를 국가정보화의 추진 관점과 사무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국가정보화의 추진이라는 주제는 정부의 모든 전산화 관련 분야에서 연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국가전산망의 구축사업이 1991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으며 이어서 1992년부터 1996년 말까지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⁶⁾. 그러나 이제 1997년부터의 제3차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 19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의 중심사업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업을 국가정보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단순히 기술적인 망의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분석모형의 구성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문헌조사는 학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헌도 검토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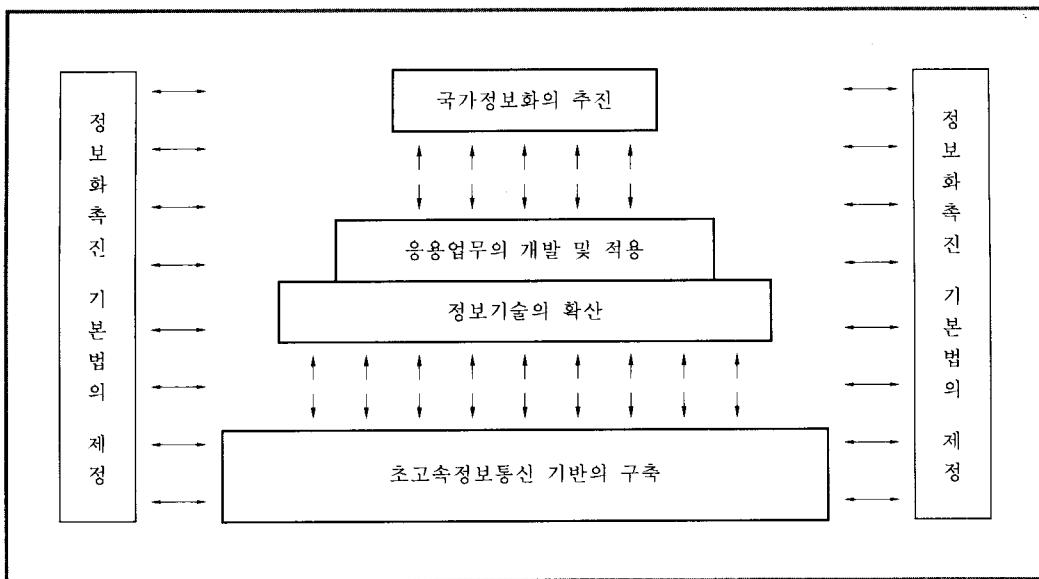


그림 1. 분석의 틀

따라서 분석의 틀에 의거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사례를 비교 역사적인 방법(Comparative Perspective)에 의하여 선진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국가정보화 추진정책의 이론적 배경

2.1 정보사회的大

“정보사회”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Daniel Bell은 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의 생산으로 이행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며, 로마 클럽에서는 공업화 사회와 비교하여 인간 개개인의 욕구를 중시하고 생태학적인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자연 및 자기 실현 지향의 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Alvin Toffler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발달이 강조되며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지하는

초산업사회로 정의하고 있다⁽⁷⁾. 이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사회·문화적인 제도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 등이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행위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社会의 특징은 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고, 정보사용을 통한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적시에 정확히 전달되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며, 그 결과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더욱 충족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도래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은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집합적인 개념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의 발달은, 크게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의한 기술의 진보로 집약될 수 있다. 컴퓨터의 경우, 초소형 전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고밀도, 고신뢰도의 회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컴퓨터의 크기가 점차 소형화, 지능화, 저렴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사회구성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7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컴퓨터와 통신 기술은 70년대 중반 이후 서로 결합하여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활용에 있어서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시장에서 무한 경쟁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러한 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기초가 되는 정보기술 기반구조(Infrastructure)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보기술 기반구조는 국가 기간산업(도로, 항만 및 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모든 부문과 연결되어 각 산업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결국 정보사회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자동화·전산화되고 또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탈산업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화의 진전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면서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²⁾.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경쟁

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자 범국가적인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³⁾.

2.2 정보화에 대한 접근 방법

정보의 개념 자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보화의 경향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⁴⁾. 여기에서는 정보화의 범위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한정하여 살펴보자 한다. 따라서 정보화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전결과가 사회 각 부문에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정보화의 구조는 컴퓨터와 전기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 측면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정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정보설비를 이용하여 얼마나 정보를 활용하느냐 하는 정보설비의 이용정도, 그리고 기술혁신이 정보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투자 및 R&D 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⁵⁾.

정보설비 지표의 측면에서는 인구 100인당 전화가입수나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대수 등이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이용 지표의 측면에서는 이동통신이나 데이터통신 또는 정보의 제작과 자료처리의 서비스 등이 인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정보처리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 각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투자 지표의 측면에서는 GDP대비 전기통신 투자액이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정보화의 지표들은 지표 그 자체의 산출보다는 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때에 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

라서 한국이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차원에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추진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그 의미가 정보화추진정책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사례

3.1 미국

미국에 있어서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라는 개념은 1980년대 상원이었던 현 미국의 부통령인 Albert Gore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1956년에 의회에서 추진된 주간고속 도로의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¹³⁾. 이후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구체화는 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에 의한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개념은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개념의 모태는 1987년 11월 20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에서 발행된 『고성능컴퓨터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상원의원 고어가 1988년에 정보슈퍼하이웨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어 1991년 12월에 고성능컴퓨터법의 성립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¹⁴⁾.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이후 선거공약인 『21세기 정보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21st Century Infrastructure Project)』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고도통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병원, 교육계, 장애자 등의 효율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경쟁력강화자문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를 구성하였다. 한편 클린턴대통령은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 경쟁력 강화와 신 방향(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이라는 보고서를 1993년 2월 22일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일본, 유럽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정보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¹⁵⁾.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1993년 9월에 발표된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genda for Action』보고서에 의해 정책 추진의 조직체계가 정립되었다. NII의 구축은 산업계, 노동계, 학계, 국민 및 정부의 연계관계 속에서 고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NII에 관련된 행정부, 의회, 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이 일관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확보되도록 광범위한 정부기관의 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진체계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NII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¹⁶⁾.

3.2 일본

일본은 미국에 비해 정보화수준 및 정보통신 기술에서 상대적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단시간에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및 21세기 고속정보 사회에 대비하여 일반 가정까지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는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⁷⁾.

“신사회자본” 건설과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첨단정보통신산업 개발로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5년 앞당겨 2010년까지 45조엔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광케이블을 추진하고, 정부는 산업이나 가정에서의 응용보다는 통신망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업체가 참여하는 『차세대정보통신망 Pilot 사업』에 정부재정 30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체제 및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광케이블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정부주도의 고속광통신

망 건설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추진체계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의 총괄에 따라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형태이다.

표 1. 일본의 주요 부처별 고도정보화의 도입 및 적용의 사례(18).

경찰청	교통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총무청	행정정보화의 계획적 추진
과학기술청	연구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환경청	환경정보제공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국토청	고도정보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계획의 책정
외무성	외교실시체제의 정보화의 촉진
대장성	금융기관의 정보화의 촉진
문부성	교육 정보화의 추진
후생성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분야의 정보화의 추진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업, 농어촌 정보화의 추진
통산성	고도정보화 프로그램의 책정
운수성	운송의 정보화로 여객 서비스의 향상
노동성	고도정보화 추진에 따른 노동문제에의 대응
건설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수용 공간의 정비
자치성	지역정보화 추진

3.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지리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싱가포르를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범정부적으로 『IT-2000』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0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고 기반기술을 도입하여 이용기술 및 응용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¹¹⁾.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상의 직속 기관으로 국가전산위원회내에 국가정보 하부구조국을 설치하여 “IT-2000”계획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체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 주요 선진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비교(17).

구 분	미 국	일 본	싱가포르
추진 계획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신사회 자본”	IT 2000(인텔리전트 아일랜드 실현)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의회 청문회(93-94) • Superhighway Summit (94.1) • 국제부역 적자 국제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 : 불경기 장기 지속 • 대외 : 미국의 “정보 고속도로” 전략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협소 및 자원 빈약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세 계적 교환센터로 전환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년도 : 2015년 •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와 세계 경제주도권 확보 • 기술 혁신과 새로운 응용 분야 창출 • 사용자 위주의 국가정보 기간망 운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년도 : 2010년 • 공공투자 촉진을 통한 경 기부양 • 차세대 광통신망을 구축 하여 경제구조개혁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년도 : 2000년 • 지식과 정보의 세계 중심 지역으로 개발 •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 170억달러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교육망 구축 - 통신/CATV 민간업체 투 자주도 - 일반공중대상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NII구축 - 성숙한 시장수요에 입각 한 민간사업자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투자선행 • 건설부문 위주의 공공투자를 광통신망 구축에 확 대 적용 • 2010년까지 53조엔의 공 공재정 투입 • 차세대 정보통신망 Pilot 사업에 정부재정 20억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 하부구조를 구 축하여 국민, 기업 정부 연계 • 즉각적인 편의를 얻기 위해 신속한 현행기술의 사용
추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NII자문 위원 회 설치 • 민간기업이 통신망 구축 • 정부는 응용개발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응용개발보다는 통신망 구축에 치중 • 광케이블망 조기구축을 위해 고속광통신망 건설 공단 설립 예정 • 정부부처별 신사회자본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직속의 국가전산위원회내의 국가정보 하부구조국 설치 • 정부가 주도하여 연구소, 학계 및 기업과 협력 추진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 투자촉진을 위 한 법제 마련 • 통신, 방송 상호진입 허 용 등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지방자치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 • 통신 사업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 지원 • 기업 및 연구기관 협력 지원
투자규모	360조원	420조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정보고속도로로 연 300조원(3,730억달러) 시장 창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연 450조원(56조 엔) 시장창출효과 • 고용창출 효과 243만명 	-

3.4 우리나라의 사례

3.4.1 정책추진 체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국·과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기획단은 통신사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산원 및 산업체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19]. 기획단의 업무 분담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건설, 운영은 통신사업자,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은 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관련 차세대전산망 개발은 한국전산원,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처리는 산업체가 담당하고 구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관리재단을 설치할 예정되어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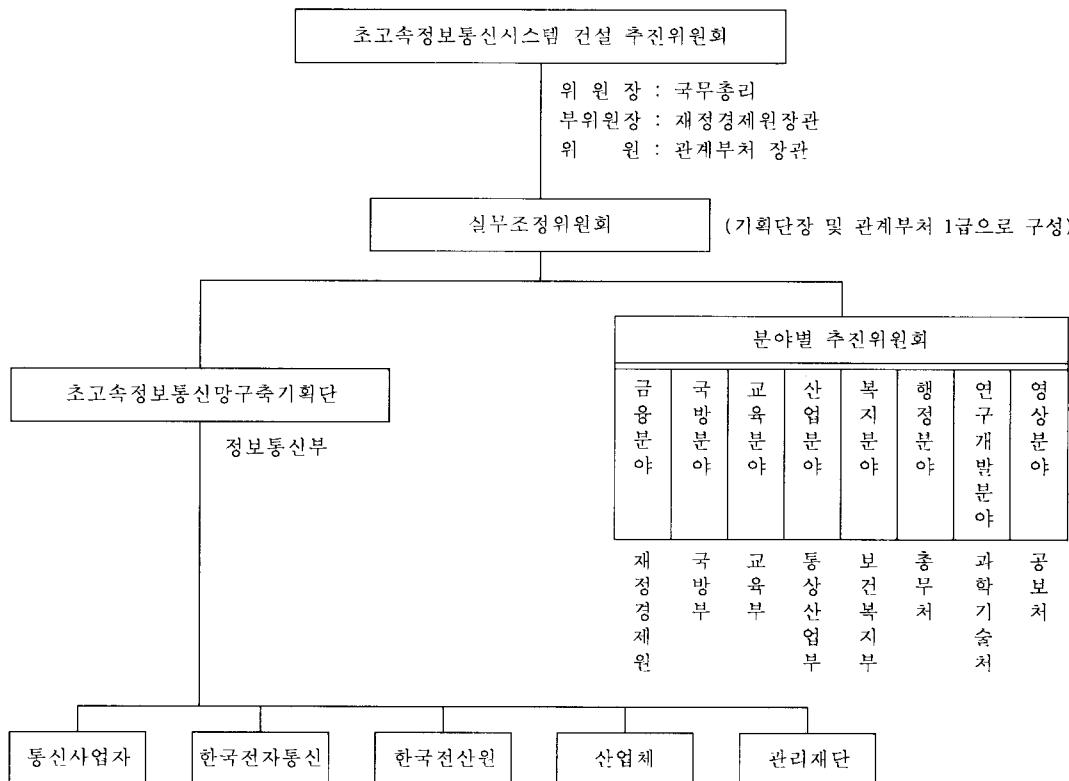


그림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추진 체계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자금조달, 기술개발, 관련법률 및 제도개선을 관장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장관, 위원은

정부부처, 학계, 산업체, 연구소 대표 등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 국·과장급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단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을 하며 단장은 1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보통신부내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여 필요시 관련부처 및 기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획단은 1996년 6월부터 정보화기획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재원의 조달계획 측면을 살펴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비는 정부재정, 통신공사주식매각대금, 배당금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소요기술개발은 진흥기금 및 통신사업자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재원으로 망 구축 및 기술개발을 하며 재정부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핵심기반 기술 개발은 국책과제로 선정,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5조2천억원이며 표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초고속국 가정보통신망에 8,910억 원,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에 소요되는 예산은 42조원, 응용핵심기술의 개발에 1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²⁰⁾.

표 3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연도별 투자 계획(21).

(단위 : 억원)

단계(년도)	제1단계 (95-97)	제2단계 (98-2002)	제3단계 (2003-2015)	계
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8,058	40,391	380,169	428,618
- 국가정보통신망	2,381	2,402	3,331	8,114
- 공중정보통신망	5,677	37,989	376,838	420,504
2. 선도시험망	140	178	292	610
3.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520	1,480	1,680	3,680
4. 기술 개발	5,451	4,280	6,432	16,163
5. 시범 사업	1,555	1,637	-	3,192
6. 여건 정비	48	55	77	180
합계	15,772	48,021	388,650	452,443

3.4.2 부처별 추진 정책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현재는 정보통신부가 정책의 주요 추진부처로 되어 있으나 한 부처의 주도가 아닌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표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범부처적인 정

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¹¹⁾.

IV. 국가정보화 추진정책

4.1 국가정보화 추진정책의 과정(입법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면서 정보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보화사회”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표 4.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부처별 추진 사항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산, 주식매각대금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성여부 및 타당성 정부규제의 정비 등 제도개선(관련 법률의 종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참여 및 투자 확대 예산 물가 등 국가통계체계 정비 금융전산망 전산체계 정비 민간 통신사업자 유치에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 단체별 전산체계 정비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산, 화상교부하는 등 민원관련 서비스 개발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안보 관련 전산체계 정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촌, 오지 등에 가능한 교육전산체계 정비 새 교육제도 및 방법의 강구, 보급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정보통신체계에 맞는 멀티미디어 등 관련 산업 육성 관련 기기 및 시스템 등 산업기술 개발 기업정보화의 촉진 및 산업정보화 관련 DB구축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관련 전산체계 정비 교통 관광 등 관련 DB개발 주요권역별 지리관련 정보의 DB구축 지리정보 전산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병원등 의료전산체계 정비 원격진료가 가능한 진료 분야 검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정보통신망건설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망 건설 계획 등 선도 시험망 건설 및 시범단지조성 계획 수립 망건설 기획단 구성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개발
문화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관련자료 DB개발
총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전산망 체계 정비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행정조직 정비
과학기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정보처리 기술 관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전산망 체계 정비 정보의 생성과정 - 서비스의 간편성, 용이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편집, 검색 과정 -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환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환경관련 전산체계 정비
공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방송정책의 재정비 방송 신문정보의 디지털화 종합 유선방송사업 진흥 방안 강구

이후 우리 사회도 컴퓨터의 일상적 활용, 신기술에의 의존 등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로 편입

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정보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가 4조원선에 달하고 1991년의 GNP

점유율 7.4%, 1992년의 국내시장규모가 225억 달러, 매년 10% 성장예상과 급속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등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한 이래 같은 해 정보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1987년을 “정보통신의 해”로 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사회의 전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6년 12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산망의 개별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동법 제1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사회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아가 1987년의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제127조 1항)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정보개발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정보화자체의 대상영역이 광범위하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법률도 다양화·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보화의 올바른 수용과 사회적 기반조성 그리고 정보화의 역기능방지를 통한 올바른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3월 “정보화사회 촉진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에서 입법하려고 했던 정보화사회촉진법(안)은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보화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정보화정책이 수립 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 옆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가 21세기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신기술경쟁력 제고, 시장대응능력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으로 국가사회의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정보화사회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90년 9월에 ‘국가사회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점추진과제를 주관부처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²²⁾.

표 5. 국가사회 정보화계획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1990년)

• 정보화 추진 분야	국가기간 전산망 확충 지역 정보화 촉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신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 보급 단말기 보급 촉진
• 정보산업 구조 고도 화 분야	정보산업 육성 정보기술 연구개발 강화 정보통신사업 진흥
• 정보화 기반조성 분야	정보문화 확산 정보인력 양성 정보기술 표준화 정보화에 대비한 법령 정비

다음의 표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기처와 상공부 및 체신부 모두가 정보화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입법을 시도하나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우선 과기처의 경우 1989년에 정보화사회촉진법(안)을 추진하였는데, 이 법(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보화사회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상공부 및 체신부 등의 관련기관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재원의 일정비율을 정보화사업비로 충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의하면 기초과학기술의 진흥 주무부서인 과기처가 정보산업의 육성을 총괄하게 되어 있었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을 보지 못하여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이어 1990년에 체신부가 정보·통신진흥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신부가 정보통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신부차관 주재 하에 정보통신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개발 시책의 수립공고,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시책의 수립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체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진흥사업단을 설립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이 조정기능(정보통신위원회)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산업기술·수출과 같은 산업육성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91년에 상공부에서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하려고 추진했으나 이 역시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된 바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의 기본계획은 경제기획위원장관이 수립하고 경제기획위원장관은 이와 아울러 정보화사회 기반조성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으로서 정보산업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갖게 하였다. 아울러 정보 산업 관련 부처의 기능을 상공부는 정보산업진흥정책 수립·시행, 산업정보화 추진, 체신부는 정보통신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및 관련 시설 확충, 과기처는 정보화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추진과 관련한 각 추진부처의 입법 사례는 표 6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6. 부처별 정보관련정책의 추진현황

정보화정책	내 용	소관부처	관련 법 제
정보화 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정보화 시책의 추진	과학기술처	정보화사회 촉진법(안)
		상 공 부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체 신 부	정보·통신진흥법(안) 전산망 보급促진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	정보산업의 육성 및 정보기술의 개발·보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체 신 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상 공 부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진흥법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정보원법

따라서 이러한 각 부처별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정보화추진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서 각 부처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부처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단의 구축시에 또다시 되풀이 된다.

4.2 정보화 촉진기본법의 제정

최근의 정부의 정보화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1995. 8. 4)을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 법령의 개정(1995. 12. 6)을 통하여 표명되고 있다. 또한 기존 상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상업장부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더구나 획기적인 새로운 입법의 예로는 '원격처리시스템'에 대한 법제도의 창설이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응용하여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등이 활성화될 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하나의 모델 입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³⁾

우선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이제까지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여 온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사업 등을 별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준비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법률 제4,969호로 제정하였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법률은 그 제정 목적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성체계는 그림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산망법')은 1986년 5월 12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그 제정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 법을 근거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발족되어 부처간 업무 조정을 하였고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등 5대 기간전산망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정보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의 개정 배경은 앞에서 살펴본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중복 부분을 조정하고, 전산망에 EDI 체계 도입,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전산망법의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특히 앞으로 허가·인가·승인·신고·신청 등 각종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도입할 경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행정업무도 크게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또한 '전산망법'에서는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한 정보화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전산망의 개념을 '조직망'에서 '정보통신체계'로 파악하며, 전자문서의 개념 도입, 그리고 '호환성·연동성' 외에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작업도 나타나고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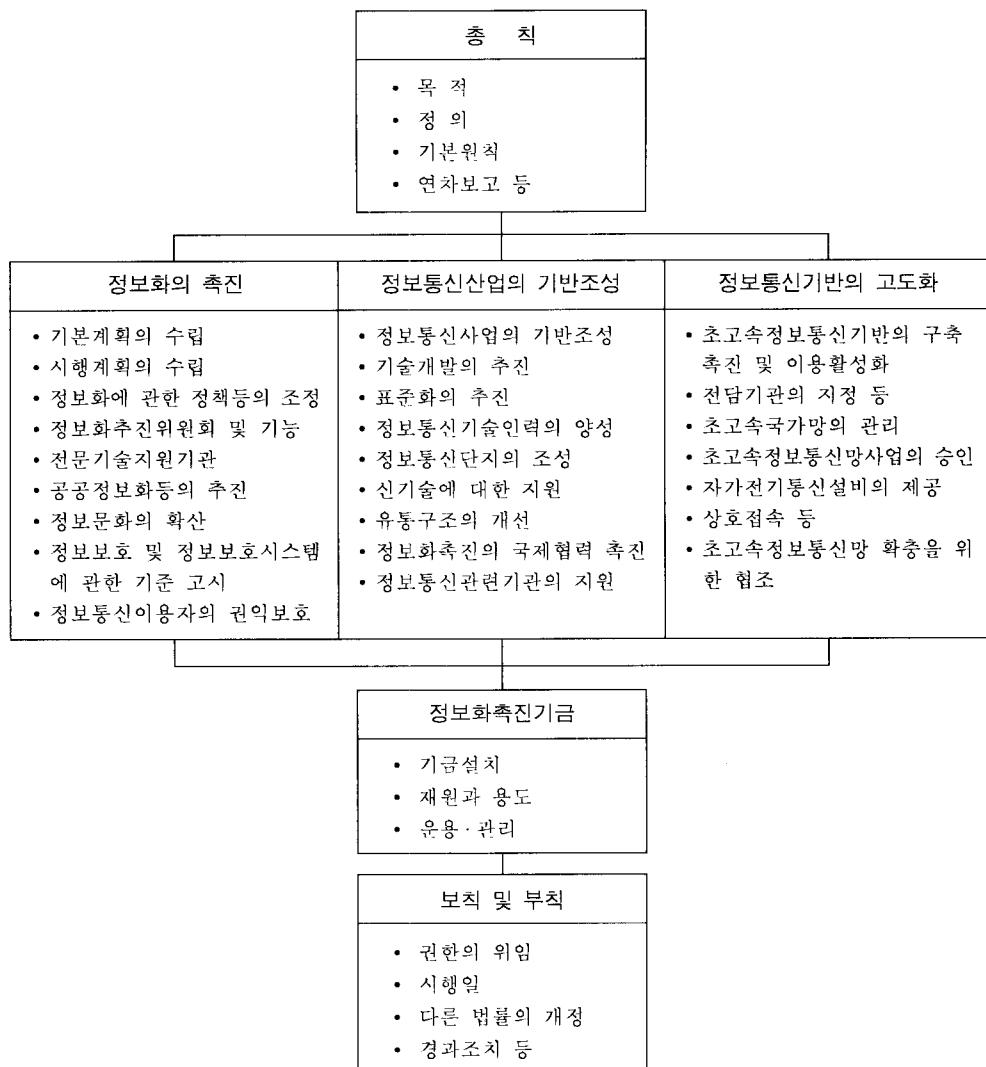


그림 3.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구성 체계(27)

4.3 사무관리 분야의 변화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을 제거하여 정보사회를 앞당기고자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가운데서 사무관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자료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간

략하게 살펴보자 한다.

전자자료교환은 다른 두 조직간에 문서의 교환 대신 직접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하는 정보교환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자료교환은 컴퓨터의 고속 사무처리 능력과 데이터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종전의 주문서, 송장, 선적요청서, 수출입 신고서 등 행정서류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한 양식의 통신표준에 따라 사람들의 개입없이

거래 상대방 컴퓨터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조직간 거래 시간의 단축은 물론 정확성 향상, 비용절감 및 더 나아가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전자자료교환이 국내에 도입된 지는 6년 이상이 되었으나 통관, 무역 등의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용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연방 구매처에서 담당하는 정부조달의 50%에 전자자료교환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문서교환 약정의 표준화 제정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주도하에 진행중인 EDI사업은 표 7과 같다.

표 7. 정부주도하에 진행중인 EDI사업 현황(28)

시스템 명	주관 기관	관련 사업자
통관 EDI	관세청	KT-NET
무역 EDI	통상산업부	KT-NET(데이콤)
물류 EDI	해운항만청	KT-NET
금융정보망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의료 EDI	보건복지부	한국통신
산업정보망	통상산업부	세일정보통신
종합물류망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작성중
CALS	국방부	기본계획 작성중
세무 EDI	국세청	기본계획 작성중
조달 EDI	조달청	기본계획 작성중

이러한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전산망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상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였다. 상법의 경우에는 종래의 상법 규정에 의하면 상업장부는 종이류에 기재되어야 하고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장치는 상업장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은행, 보

험회사 기타 기업 등에서는 상법이 정보기술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실제로는 컴퓨터로 처리를 하면서도 상법 규정에 합치되도록 방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5년내지 10년씩 보관함에 따라 자료의 보관 및 검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그 동안 기업 등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부분적인 보존이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CD-ROM 등 특수 기록매체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종전에는 문서류로서 '기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V. 결 론

21세기의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에 모든 국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지하겠다는 야심하에 행정부와 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및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범부처적으로 정책의 추진 기구를 조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기구 개편의 여파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추진 정책 또한 선진국의

계획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까지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것은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이 모호한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29]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단순히 통신망의 구축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자동화의 학문적인 분석의 틀을 개발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을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무자동화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사무관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통신기반의 응용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돈,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상과 통신사업자의 동향”, 통신정책동향, 통권 116호, 통신개발연구원, 1994년 5월 2일.
- [2]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일본의 정보화 구상과 행정정보화 추진방향」, 1995년.
- [3]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초고속 정보통신」, 한국정보문화센터, 1995년.
- [4] 한국산업은행,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 1994년 12월.
- [5] 조선일보, “7월부터 공문서 전자결재”, 1996년 4월 24일.
- [6]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연구」, 1994년.
- [7]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유재천 역, 주우, 1981년.
- [8] 김동주, 『정보통신과 국가경쟁력(II)』, 통신개발연구원, 1993년 12월.
- [9] 권기창,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의 현황과 과제, 행정문제논집, 13집,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95년 12월.
- [10] Yoneji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Institute for Information Society Committee on Application and Technology(IITF) : Putt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Work, 1994.
- [11]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1994년.
- [12] 조신, “통신서비스산업 정책방향 -정부 규제와 산업구조정책-”, 국내외 통신환경의 변화와 통신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 1994년 11월 3일.
- [13] Al Gore,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A PLUME BOOK, 1993.
- [14] 한주용,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개념정립과 미국의 추진상황”, 통신정책동향, 통권 115호, 통신개발연구원, 1994년 4월 16일.
- [15] 한국전산원, 「국가정보기반과 행정서비스」, 1994년.
- [16] 한국전산원, 미국 연방정부의 부처별 국가 정보화 시책 추진실적(2), 1995년.
- [17] 천조운,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정보통신기술 및 표준화동향 세미나, 한국통신기술협회, 1994년 10월 26일.
- [18] 윤석항·이경희,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

- 전략과 민간 및 정부의 역할」. 통신개발 연구원. 1995년.
- [19]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연구반, 「21세기의 한국과 초고속 정보통신」. 한국전산원. 1994년.
- [2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해설서』.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995년.
- [21] 임명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기대 효과”. 「초고속정보통신」, 2호 : 12-17. 1995년.
- [22]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1992년.
- [23] 신각철, 1996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실태”. 데이터베이스 월드 1월 호. 1996년.
- [24] 강성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 추진방안”. 데이터베이스월드 1월 호. 1996년.
- [25] 심황섭, 전자적 형태의 문서효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2권 제3호. pp.60-80. 1995년.
- [26] 신각철, “CALS, EDI데이터베이스의 법제화 동향”, 데이터베이스 월드 2월호. 1996년.
- [27] 강성주,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월간정보화사회. 1995년 9월호.
- [28] 김은, “EDI 도입 및 확산 방안 - 공공부문의 EDI활용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2권 제4호. pp.87-99. 1995년.
- [29] 정충식, “정보시스템의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정보과학회전문대학논문지」, 3권 2호: 217-225. 1995년 12월.

□ 簽者紹介

정 충 식



1984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취득
1987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취득
1992년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취득
1996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6년 현재 용인공업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 관심 분야 : 정보체계론, 정보사회론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